

(붙임1)

「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전부개정 주요 내용

I 개정 필요성

- 통화정책국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업무를 일부 전산화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제·개정

전산화 전후 주요 업무 프로세스 비교

	현행	전산화 이후
① 대출취급실적 제출 (금융기관 → 한국은행)	엑셀파일 및 실물서류 ¹⁾ 제출	대출취급실적 명세 전문[T9] 송신
② 사전심사(지역본부)	건별 육안심사(증빙서류 대조)	전산심사
③ 한도배정(지역본부)	사전심사 완료된 대출취급실적에 대해 자체 운용기준에 따라 전략·특별·일반 지원부문으로 배정	
④ 사후심사(지역본부)	없음	기배정된 대출취급실적을 임의추출하여 적격성 심사

주: 1) 배정신청서, 대출원장, 사업자등록증명, 각종 인증서류 등

- 전문 송수신 등 전산심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역본부별로 상이한 운용기준을 상위규정인 세칙 개정과 절차 신설*을 통해 일원화 하고, 지역본부별 운용기준을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도록 함

⇒ 이에 따라 우리 본부 운용기준을 표준안에 맞추어 전부 개정할 필요

II 주요 개정 내용

- 통화정책국에서 제시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표준안에 따라 우리 본부 운용기준 전부를 개정
 - 제명을 「한국은행 경기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」으로 변경
 - 조문 편제를 목적(제1조), 지원대상(제2조), 사후심사 자료제출(제3조), 평가관리 기준(제4조), 기타 사항(제5조)으로 하고, 각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함

- (지원대상) 현행과 같이 하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
- (제외업종) 상위규정인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 운용절차」상의 제외업종을 기존 제외업종에 추가 (주차장운영업, 스키장운영업 등)

한편 제외업종의 적용은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업종을 기준으로 하되 불건전,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체는 업종의 등록코드 및 주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 (<별표 2>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 각주 2))

- (사후심사시 제출자료) **금리산출표**를 **추가**로 제출하고,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명을 국세청으로부터 대출취급일 10일 이내*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한

* 국세청의 문서발급번호 조회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

현행	개정(안)
1. 대출금원장(사본)	1. 대출금원장(사본)
2. 사업자등록증명(사본)	2. 사업자등록증명(사본, 국세청발급, 대출실행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된 것)
3.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(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)	3. 금리산출표(사본)
4. 기타 경기본부장이 요청한 서류	4.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(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)
	5. 기타 경기본부장이 요청한 서류

- (평가관리기준(신설))*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」 제6조에 따라 평가 실시

1. 금리 감면폭(30%)
2. 제출자료의 정확성(20%)
3. 제출기한 준수 여부(20%)
4. 규정 준수 여부(20%)
5. 제도에 대한 이해도(10%)

Ⅲ 시행일 및 그 밖의 조치사항

□ **시행일** : 2024. 4. 1일(금융기관 대출취급일 기준)